

	법률동향	2026. 4. 30.(목) 법무과장 윤재순(☎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5월 주요 시행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5. 1.] [법률 제21543호, 2026. 4. 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국가 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인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저작권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신설).
-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신설).
-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 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함(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 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3조).

-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하는 등 도핑과 관련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제2조제10호·제10호의2 신설,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48조제5호의2 신설).
-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1조의5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본문).
-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 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주요 기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인식조사와 해당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마.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31조).
-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 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3호의2,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진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 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 제5항, 제72조의2 신설).
-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 도서관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후단 신설).
- 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제43조의3 신설).
-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4 신설).

- 유아교육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0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제31조의2제5항 신설).
-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 -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2)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나누어 조사·심의함으로써 조사·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를 둔.
- 2) 시·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
- 나. 시·도지사는 법원·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
-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
-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

- 산지관리법 -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